신안산대학교	학과 산학협동위원회 규정	규 정 번 호	4-1-23
		제 정 일 자	2001.02.10
		개 정 일 자	2001.02.10
		책임부서/팀·계	대외처

제1조(명칭) 신안산대학교 학과 산학협동위원회 (이하 "학과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학과위원회는 산학연계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함으로서 산업체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학과 위원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 각 학과에 둔다.

제4조(구성) 학과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학과에서 추천한 약간 명의 산업체인사는 임명직 위원이 된다.

제5조(추진사업) 학과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산학간의 연계체제 확립
2.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3. 산업체 인사의 대학교육 참여
4. 교과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연구
5.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협조
6. 산업체의 위탁교육
7. 산업체의 학습시설 활용(산학간의 시설활용에 관한 사항)
8. 교수·학생의 산업체 현장연수 및 견학
9. 산업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연구
10. 산업 기술정보 수집(산학간의 정보교환 및 취업지도)
11.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임원) 학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간사 1명

제7조(임원의 선임) 학과 위원회의 임원은 학과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위원장은 학과의 학과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산업체위원이 된다.
3.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중에서 선임한다.

제8조(임기) 학과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보직기간으로 한다.
2. 부위원장과 간사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 위원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0조(재정) 학과 위원회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본 대학의 예산과 산업체의 찬조금으로 한다.

제11조(회의) 학과 위원회의 회의는 본 대학 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제13조(의결) 본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협의사항통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 하여 본 대학 위원회로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